

부천시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0. 12. 4
- 나. 재 출 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0. 12. 4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12. 7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중욱)

제안사유

-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(위탁관리)규정에 의거 부천체육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- 부천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행사 유치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며 전문인의 운영관리로 효율성 증대
-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 부천체육관 위탁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위탁시설의 내용

- 명 칭 : 부천시 부천체육관(부천체육관 및 부대시설)
-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24번지
- 시설내역
 - 규 모 : 지하 1층~지상 3층 • 대지면적 : 81,631㎡(24,693평)
 - 연 면 적 : 15,479㎡(4,682평) • 건축면적 : 6,209㎡(1,878평)
 - 조경면적 : 41,387㎡(12,519평)

위탁업무 추진계획

시의회 동의 → 수탁기관 선정 → 위·수탁계약 체결 → 사무·시설 운영 → 인계·인수 → 수탁기관 운영개시

□ 위탁방법

-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적격자 심의 선정(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: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)

3. 질의답변 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부천체육관에 근무하는 인원은? ○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그 인력이 종합운동장으로 흡수되는가? ○ 수탁기관을 공개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정해야 하나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한 것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안 받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? ○ 종합운동장 증원의 상급기관 승인 여부는? ○ 부천체육관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시에서는 체육회, 생활체육협의회, 시설관리공단 등 3곳 뿐이며 시설관리 경험이 있는 기관이 있는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적 10명, 청경 6명 등 총 16명임 ○ 현재는 체육청소년과 소속이며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자연스럽게 이동 근무가 가능함 ○ 당초에 체육관의 위탁계획은 없었고 구조조정과 맞물려 체육관 등 시설을 민간위탁토록 방침이 정해졌음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며 다만,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체육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토록 되어 있으며 체육단체는 부천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두 단체에 의견을 타진해 보았으나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시에 지방공사가 1개 뿐인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부적으로 정하였던 것임. 그리고 시설관리 면에서 볼 때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○ 현재 요청 중에 있으며 아직 승인 안 되었고 이천시는 증원승인을 해 주지 않았음 ○ 3곳 뿐이며 3곳 모두 시설관리 경험은 없음

○ 지금까지의 수탁자 내부결정 등 절차상 잘못이 있으므로 위탁을 절차대로 다시 할 수 있는가?

○ 위탁동의만 해주면 위탁 절차를 준수하여 다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부천체육관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공개모집 등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의회 동의없이 내부적으로 수탁자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해 놓고 사후에 의회에 동의요구 하는 것은 부당하나
- 의회 동의 후 절차를 준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의견임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

의안번호	관련 제415호
의결년월일	2000. 12. 23 (제83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사유

-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(위탁관리)규정에 의거 부천체육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- 부천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행사 유치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며 전문인의 운영관리로 효율성 증대
-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 부천체육관 위탁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□ 위탁시설의 내용

- 명 칭 : 부천시 부천체육관(부천체육관 및 부대시설)
-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24번지
- 시설내역
 - 규 모 : 지하 1층~지상 3층 • 대지면적 : 81,631㎡(24,693평)
 - 연 면 적 : 15,479㎡(4,682평) • 건축면적 : 6,209㎡(1,878평)
 - 조경면적 : 41,387㎡(12,519평)

□ 위탁업무 추진계획

시의회 동의 → 수탁기관 선정 → 위·수탁계약 체결 → 사무·시설 운영 → 인계·인수 → 수탁기관 운영개시

□ 위탁방법

-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적격자 심의 선정(부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: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)